

1. 개정이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과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 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9. ~ 7. 29., 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외국인 근로자 보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과되지”를 “1년이 지나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를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4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4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부터 제17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4의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4의5. 「선원법」 제167조, 제168조, 제170조, 제173조 또는 제174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미만으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4조의2제3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의 기준) ① (생 략)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법무부장관은 「 <u>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 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 지 않을 수 있다.	②----- 「 <u>과건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u> 」----- ----- ----- ----- ----- ----- -----.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 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 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u>3년</u> (다 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 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 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 다. (생 략)	1. ----- ----- ----- ----- ----- <u>3년</u>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2. -----

<신 설>

<신 설>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

한 날

4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16

8조부터 제17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

한 날

4의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신 설>

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
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
한 날

4의5. 「선원법」 제167조, 제16
8조, 제170조, 제173조 또는
제174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 ~ 8. (생략) ③·④ (생략) <u><신설></u>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략) 3.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의 기준: <u>2020년 1월 1일</u> 3의2. ~ 5. (생략)	<u>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u> 5.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미만으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2027년 1월 1일</u> 3의2. ~ 5. (현행과 같음)
---	---